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4. 3. 3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2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2월 23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02회(임사회) 제4차 위원회(2004. 3. 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진)

- 가. 개정이유
 - 개정된 지방자치법(법률 제4741호)이 공포, 시행(1994. 3. 16.)되어 동장을 별정직 5급 상당에서 행정직 5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동장에 관한 규정 및 근무상한연령 연장 규정을 삭제하고,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- 제2조제1항 중 “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다”를 삭제
 - 제2조제2항을 삭제
 - 제7조제1항 중 “근무상한연령 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”를 삭제
 - 제7조의2(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의 비서요원 근무상한기간) “지방자치단체장(구청장) 및 의회 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”를 신설
- 다. 참고사항
 - 관련근거 : 법률 제4741호(1994. 3. 16.)
 - 예산근거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창수)

조직의 운영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 다만, 신설하고자 하는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“지방자치단체장(구청장) 및 의회 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”의 규정은 의회의 경우 임기 중 의장단이 전·후반기로 2회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9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2. 13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개정된 지방자치법(법률 제4741호)이 공포, 시행(1994. 3. 16.)되어 동장을 별정직 5급 상당에서 행정직 5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동장에 관한 규정 및 근무상한연령 연장 규정을 삭제하고,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2조제1항 중 “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”을 삭제
- 나. 제2조제2항을 삭제
- 다. 제7조제1항 중 “근무상한연령 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”를 삭제
- 라. 제7조의2(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의 비서요원 근무상한기간) “지방자치단체장(구청장) 및 의회 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”를 신설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법률 제4741호(1994. 3. 16.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의사항 : 관련부서 합의 완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”을 삭제한다.

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7조 다음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의 비서요원 근무상한기간) 지방자치단체장(구청장) 및 의회 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	행	개	정	안
<p>제2조(적용범위)</p> <p>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②동장인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7조(근무상한연령)</p> <p>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근무상한연령 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준용한다.</p> <p>② 생략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적용범위)</p> <p>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제></u></p> <p>제7조(근무상한연령)</p> <p>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의2(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 비서요원 근무상한기간) 지방자치단체장(구청장) 및 의회 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